

##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문개정 2004년 10월 2일 조례 제 798호  
전부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4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5호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6>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파손부분”이라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 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7. 9. 26>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법 제91조

##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2018. 4. 16>

1. 도로복구공사 시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할 것
  2. 표층은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할 것
  3.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할 것
- 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6>
-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9. 26>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9. 26]

**제6조(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야 하며, 응급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6>

[제목개정 2017. 9. 2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4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6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4조제3항)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10cm 중 층 : 15cm 기 층 : 20cm 보조기층 : 40cm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 10cm 중 층 : 7.5cm 기 층 : 20cm 보조기층 : 30cm	지선도로
	A-C	표 층 : 10cm 콘크리트 : 20cm 보조기층 : 20cm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C-2	표 층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블럭표층 : 6cm 모 래 : 3cm 기 층 : 10cm	
	유색보도	일반보도블럭표층 : 6cm 모 래 : 3cm 기 층 : 10cm	
	대형고압 (오나먼트)	대형고압표층 : 4.5cm 물 탈 (1 : 3) : 3cm 기초콘크리트(5중) : 10cm	
	소형고압	소형고압블럭표층 : 6cm 모 래 : 4cm 기 층 : 10cm	
	화 강 석	화 강 석 표층 : 3cm 물 탈 (1 : 3) : 4.5cm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cm 기 층 : 10cm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cm 기 층 : 10cm 모 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 비고

-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 20cm 추가하여야 한다.
-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17. 9. 26>

###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4조제3항)

-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컷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